

제2절 기타소득

1. 기타소득의 범위

기타소득은 일시적,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
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·양도소득
외의 소득으로 법에 열거된 소득

→ ∴ 기타소득이 다른 소득에도 해당되면 다른 소득으로 구분. 고용관계
있으면 근로소득, 고용 관계없이 계속·반복적으로 발생(사업적)하면
사업소득으로 봄.

구 분	기타소득의 범위
양 도 대 여 의 대 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저작자 등 외의 자(저작권 등을 상속·증여 받거나 양도받은 자를 말함)가 받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대가 [비교] 저작자 본인이 받는 사용대가: 사업성 있으면 사업소득, 사업성 없으면 기타소득 · 영화필름 등 이와 유사한 자산·권리의 양도·대여·사용 대가 ·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·대여 대가 [비교] 사업용 고정자산(토지·건물·부동산에 관한 권리)와 함께 영업권 양도: 양도소득 · 물품(유가증권 포함)·장소의 일시적 대여 대가 [비교] 물품 또는 장소의 사업적 대여: 사업소득 · 지역권·지상권의 설정·대여 대가 [비교] 지역권 양도: 과세×(양도불가자산), 지상권 양도: 양도소득 · 개당·점당·조당 양도가액이 6,000만원 이상인 법에 정한 서화·골동품 등의 양도소득(단,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함)

구분	기타소득의 범위
소득 구분 시 주 의 해 야 할 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약금·배상금으로 받은 것과 그 법정이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것: 기타소득 - 위 외의 것(사례: 명예훼손이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): 과세× ·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칙: 이자소득 - 중도해지 또는 만료 후 일시금: 기타소득(해외 이주 등으로 해지 시에는 이자소득) ·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금형태로 수령시: 연금소득 - 연금 외 수령시: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, 그 밖의 경우는 기타소득→기타소득 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소득은 분리과세(원천징수세율: 15%)하고, 그 외의 소득은 조건부과세 ·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무기간 중 행사시: 근로소득 - 퇴직 후 행사시: 기타소득, 고용 관계없이 받아 행사 시: 기타소득

구분

기타소득의 범위

· 위 외에 법에 열거된 것

[사례]

-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가 받는 급여 등

기타 - 상금 · 현상금 · 복권 등의 당첨권 · 승마투표권등의 환급금, 기타 보상금 등

-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, 사례금

-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

- 뇌물과 알선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

2. 비관세 기타소득

- ①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
보훈급여금·학습보조비
- ②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·보로금
및 그 밖의 금품
- ③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
- ④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 밖에
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
부상
- 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중 사용자로부터 받는
보상금과 대학원의 교직원이 소속된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
받는 보상금
- ⑥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 및 그 밖의 금품
- ⑦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·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- ⑧ 서화·골동품을 박물관·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
3.기타소득금액의 계산

(1) 계산구조

기타소득금액=총수입금액(비과세소득, 분리과세소득 제외)-필요경비

(2) 필요경비

입증액을 공제하되, 다음의 경우 법에 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

구분	내용
최소한 80%를 필요경비 로 인정 하는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공익법인 상금,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• 지역권 · 지상권 설정 · 대여 대가• 다음의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대가→사업적으로 하면 사업소득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고용관계없이 받는 강연료- 라디오, TV 등 해설,계몽, 연기심사 등의 대가- 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지식 등 활용대가- 위와 비슷한 성질의 대가• 주택입주지체상금→이것 외의 배상금(예: 상가입주지체상금)은 입증안되면 공제×•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(문예 · 학술 · 미술 · 음악 · 사진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등의 대가)→[비교] 작가의 인세수입은 사업소득•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 · 대여 대가

(2) 필요경비

입증액을 공제하되, 다음의 경우 법에 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

구분	내용
서화·골동품 등 양도소득	• 최소한 80%(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90%)
기타	•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: 구입·적중된 승마투표권 등의 단위투표금액 합계액 •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: 당첨 직전에 투입한 금액

4.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

구분	과세최저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승마투표권 · 승자투표권 · 소싸움경기투표권 ·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	<p>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	<p>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(필요경비 차감한 후의 금액) 	<p>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</p>

5. 기타소득의 수입시기

구분	수입시기
• 원칙	지급을 받은 날
•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기타소득	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
•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을 ‘양도’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	대금청산일 · 인도일 ·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. 단,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
• 계약금이 위약금 ·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	계약의 위약 · 해약이 확정된 날
•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 중 연금외수령 소득	연금외 수령한 날

6.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등

(1) 과세방법

① 1단계: 기타소득의 구분

구분	내용
무 조건 분리 과 세(A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금외수령한 소득 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• 서화·골동품 양도소득 • 복권당첨금 • 승마투표권·승자투표권·소싸움경기투표권·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•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•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
무 조건 중합 과 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뇌물·알선수재·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(B) •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위약금·배상금 중 계약금의 위약금 등 대체액 (C) <p>[비교]무조건 중합과세 이유: 뇌물 등은 원천징수제외대상이므로 분리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</p>
조건 부 과세(D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 외의 소득

② 2단계:조건부과세대상의 종합과세 여부 판단

- (C)기타소득금액+(D)기타소득금액 \leq 300만원인 경우: 조건부과세대상은 분리과세선택가능
- (C)기타소득금액+(D)기타소득금액 $>$ 300만원인 경우: 종합과세

[주의]

1. 기타소득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.
2.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총액을 종합과세함.

(2) 원천징수

기타소득의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.

구분	원천징수세율
복권당첨금, 승마투표권 · 승자투표권 · 소싸움경기투표권 ·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, 슬롯머신 등 당첨금	3억원까지: 20% 3억원초과: 30%
뇌물 ·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	원천징수하지 않음(무조건 중합과세)
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소득 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은 소득	15%
그 밖의 기타소득	20%